

광주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5548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문옥, 양선화, 유병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1. 10. 12. 접수 제155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4. 선고 2010가소1633186 판결로 C에 대하여 구상금 10,316,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2.부터 2011. 3. 2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5.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자 2021차전101488 지급명령으로 C에 대하여 구상금 26,533,930원 및 그 중 10,316,023에 대하여 201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1. 6. 23.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C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8. 11. 2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자녀들인 E, C(상속지분 2/15), F, G, H, I는 202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15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C의 모친으로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부동산의 소유경위, 혼인기간,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피고 주장의 기여분이 산정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물반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15분의 2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21. 9. 27.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21. 10. 12. 접수 제155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별지